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화력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사거리 포탄의 정확도 향상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고,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통신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 무선통신망 성능 향상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 및 감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거리 공중감시 능력 강화사업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5. 2. 5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방위사업 검증사무의 일관성 제고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하부조직인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두는 개발사업담당관 및 구매사업담당관을 통합하여 사업검증담당관으로 개편하고, 아시아·독립국가연합(CIS) 및 중남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등 수출전략 수립 등에 관한 국제협력관 보좌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장 하부조직인 국제협력관 밑에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을 신설하며, 이에 따라 국제협력관 밑에 두는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의 명칭을 유럽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의 분장사무 중 아시아·독립국가연합(CIS)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등 수출전략 수립 등에 관한 국제협력관 보좌에 관한 사무 및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의 분장사무 중 중남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등 수출전략 수립 등에

관한 국제협력관 보좌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이 분장하도록 하고,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,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(8급 1명, 9급 1명) 및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(8급 2명, 9급 2명)을 각각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2. 7. ~ 2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제2항 중 “감독총괄담당관·감독지원담당관·개발사업담당관 및 구매사업담당관”을 “감독총괄담당관·감독지원담당관 및 사업검증담당관”으로, “개발사업담당관 및 구매사업담당관”을 “사업검증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개발사업담당관”을 “사업검증담당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“연구개발사업, 양산사업, 성능개량사업 등”을 각각 “방위력개선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국제협력총괄담당관·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·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북미지역협력담당관”을 “국제협력총괄담당관·유럽협력담당관·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·북미지역협력담당관 및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”을 “유럽협력담당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유럽·아시아·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(CIS)”을 “유럽 및 러시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“중동·아프리카·중남미 및 오세아니아”를 “중동·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.

1. 아시아·독립국가연합(CIS) 및 중남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 등의 수출전략 수립
2.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, 시장조사,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
3.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
4.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
5.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

제13조의3제1항 중 “함정총괄계약팀·호위함사업팀·한국형구축함사업팀·상륙함사업팀·소해함사업팀 및 전투지원함사업팀”을 “함정총괄계약팀·호위함사업팀·한국형구축함사업팀·상륙함사업팀·고속기뢰전함사업팀 및 합동전력함정사업팀”으로, “소해함사업팀장 및 전투지원함사업팀장”을 “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 및 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소해함사업팀장은 소해함”을 “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은 고속함 및 기뢰전함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전투지원함사업팀장은 전투지원함”을 “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은 합동전력함정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3제1호라목 중 “소해함사업팀, 전투지원함사업팀”을 “고속기뢰

전함사업팀, 합동전력함정사업팀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361”을 “36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61”을 “362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98”을 “99”로, 행정서기·세무서기·관세서기·통계서기·공업서기·농업서기·해양수산서기·항공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“11”을 “12”로, 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관세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·농업서기보·해양수산서기보·항공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6”을 “7”로, 사무운영서기 “1”을 “0”으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3”을 “2”로 한다.

별표 2의2 중 총계 “362”를 “36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62”를 “363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100”을 “101”로, 행정서기·세무서기·관세서기·통계서기·공업서기·농업서기·해양수산서기·항공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“11”을 “12”로, 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관세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·농업서기보·해양수산서기보·항공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6”을 “7”로, 사무운영서기 “1”을 “0”으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3”을 “2”로 한다.

별표 2의3 중 총계 “361”을 “36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61”을 “362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

관·보건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
사무관 “98”을 “99”로, 행정서기·세무서기·관세서기·통계서기·공업
서기·농업서기·해양수산서기·항공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
방송통신서기 “11”을 “12”로, 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관세서기보·통
계서기보·공업서기보·농업서기보·해양수산서기보·항공서기보·시
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6”을 “7”로, 사무운영서기
“1”을 “0”으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3”을 “2”로 한다.

별표 2의4 중 총계 “362”를 “36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62”를 “363”으
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
사무관·보건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
통신사무관 “100”을 “101”로, 행정서기·세무서기·관세서기·통계서기
·공업서기·농업서기·해양수산서기·항공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
또는 방송통신서기 “11”을 “12”로, 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관세서기
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·농업서기보·해양수산서기보·항공서기
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6”을 “7”로, 사무운
영서기 “1”을 “0”으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3”을 “2”로 한다.

별표 2의5 중 총계 “361”을 “36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61”을 “362”로 하
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
관·보건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
사무관 “98”을 “99”로, 행정서기·세무서기·관세서기·통계서기·공업
서기·농업서기·해양수산서기·항공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

방송통신서기 “11”을 “12”로, 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관세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·농업서기보·해양수산서기보·항공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6”을 “7”로, 사무운영서기 “1”을 “0”으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3”을 “2”로 한다.

별표 2의6 중 총계 “362”를 “36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62”를 “363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100”을 “101”로, 행정서기·세무서기·관세서기·통계서기·공업서기·농업서기·해양수산서기·항공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“11”을 “12”로, 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관세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·농업서기보·해양수산서기보·항공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6”을 “7”로, 사무운영서기 “1”을 “0”으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3”을 “2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341”을 “34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41”을 “343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86”을 “87”로, 행정주사·세무주사·관세주사·통계주사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해양수산주사·항공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“115”를 “116”으로, 행정서기·세무서기·관세서기·통계서기·공업서기·농업서기·해양수산서기·항공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“10”을 “12”로, 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관세

서기보 · 통계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농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항공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2”를 “4”로, 사무운영서기 “2”를 “0”으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3”을 “1”로 한다.

별표 3의2 중 총계 “342”를 “344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42”를 “344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87”을 “88”로, 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관세주사 · 통계주사 · 공업주사 · 농업주사 · 해양수산주사 · 항공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“113”을 “114”로, 행정서기 · 세무서기 · 관세서기 · 통계서기 · 공업서기 · 농업서기 · 해양수산서기 · 항공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“9”를 “11”로, 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관세서기보 · 통계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농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기보 · 항공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2”를 “4”로, 사무운영서기 “2”를 “0”으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3”을 “1”로 한다.

별표 3의3 중 총계 “341”을 “343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41”을 “343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86”을 “87”로, 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관세주사 · 통계주사 · 공업주사 · 농업주사 · 해양수산주사 · 항공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“115”를 “116”으로, 행정서기 · 세무서기 · 관세서기 · 통계서기 · 공업서기 · 농업서기 · 해양수산서기 · 항공서기 · 시설서기 ·

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“10”을 “12”로, 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관세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·농업서기보·해양수산서기보·항공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2”를 “4”로, 사무운영서기 “2”를 “0”으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3”을 “1”로 한다.

별표 3의4 중 총계 “342”를 “344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42”를 “344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87”을 “88”로, 행정주사·세무주사·관세주사·통계주사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해양수산주사·항공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“113”을 “114”로, 행정서기·세무서기·관세서기·통계서기·공업서기·농업서기·해양수산서기·항공서기·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“9”를 “11”로, 행정서기보·세무서기보·관세서기보·통계서기보·공업서기보·농업서기보·해양수산서기보·항공서기보·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“2”를 “4”로, 사무운영서기 “2”를 “0”으로, 사무운영서기보 “3”을 “1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의3(방위사업감독관) ① (생략)	제3조의3(방위사업감독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<u>감독총괄담당관 · 감독지원담당관 · 개발사업담당관 및 구매사업담당관</u> 을 두되, 감독총괄담당관 및 감독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<u>개발사업담당관 및 구매사업담당관</u> 은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<u>감독총괄담당관 · 감독지원담당관 및 사업검증담당관</u> ----- ----- ----- -- <u>사업검증담당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개발사업담당관</u>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.	⑤ <u>사업검증담당관</u>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연구개발사업, 양산사업, 성능개량사업</u> 등의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업무	2. <u>방위력개선사업</u> ----- ----- -----
3. <u>연구개발사업, 양산사업, 성능개량사업</u> 등의 감독 및 비리예방에 관한 업무	3. <u>방위력개선사업</u> ----- ----- -----

4. (생 략)

⑥ 구매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.

1. 방위력개선사업 중 구매사업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2. 방위력개선사업 중 구매사업의 감독 및 비리예방에 관한 업무

제5조(국제협력관) ① (생 략)

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총괄담당관·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·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을 두되,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.

③ (생 략)

④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.

1. 유럽·아시아·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(CIS) 지역 국가에

4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5조(국제협력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국제협력총괄담당관·유럽협력담당관·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·북미지역협력담당관 및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유럽협력담당관-----
-----.

1. 유럽 및 러시아 -----

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

2. ~ 5. (생략)

⑤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.

1. 중동·아프리카·중남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

2. ~ 5. (생략)

⑥ (생략)

<신설>

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.

1. 중동·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-----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.

1. 아시아·독립국가연합(CIS) 및 중남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

2.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 시장 개척, 시장조사,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

3.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

4.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

제13조의3(합정사업부의 하부조직) ① <u>합정사업부에 합정총괄계약팀·호위합사업팀·한국형구축합사업팀·상륙합사업팀·소해합사업팀 및 전투지원합사업팀</u>을 두며, 합정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, 호위합사업팀장 및 상륙합사업팀장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, 한국형구축합사업팀장·<u>소해합사업팀장 및 전투지원합사업팀장</u>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. ② ~ ⑤ (생략) ⑥ <u>소해합사업팀장은 소해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</u>	<u>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</u> 5.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제13조의3(합정사업부의 하부조직) ① ----- <u>합정총괄계약팀·호위합사업팀·한국형구축합사업팀·상륙합사업팀·고속기뢰전합사업팀 및 합동전력합정사업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고속기뢰전합사업팀장 및 합동전력합정사업팀장</u>----- ---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<u>고속기뢰전합사업팀장은 고속함 및 기뢰전함</u> ----- -----
--	---

한다.

⑦ 전투지원합사업팀장은 전투지원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제25조의3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) 「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
가. ~ 다. (생략)
라. 합정사업부: 호위합사업팀, 한국형구축합사업팀, 상륙합사업팀, 소해합사업팀, 전투지원합사업팀

마. 삭제

바. ~ 아. (생략)

2. (생략)

⑦ 합동전력합정사업팀장은 합동전력합정 -----

-----.

제25조의3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) ---

-----.

1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-----

----- 고속기뢰전합사업팀, 합동전력합정사업팀

바. ~ 아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(군인 제외) 정원표(제24조제1항 본문
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61</u>	<u>362</u>	+1
일반직 계	<u>361</u>	<u>362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			
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			
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			
· 보건사무관 · 항공사			
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			
산사무관 또는 방송통			
신사무관	<u>98</u>	<u>99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 · 세무서기 · 관			
세서기 · 통계서기 · 공			
업서기 · 농업서기 · 해			
양수산서기 · 항공서기			
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			
또는 방송통신서기	<u>11</u>	<u>12</u>	+1

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관세서기보 · 통계서 기보 · 공업서기보 · 농 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 기보 · 항공서기보 · 시 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<u>6</u>	<u>7</u>	+1
사무운영서기	<u>1</u>	<u>0</u>	-1
사무운영서기보	<u>3</u>	<u>2</u>	-1
.	.	.	

[별표 2의2]

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(군인 제외) 정원표(제24조제1항 단서
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62</u>	<u>363</u>	+1
일반직 계	<u>362</u>	<u>363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			
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			
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			
· 보건사무관 · 항공사			
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			
산사무관 또는 방송통			
신사무관	<u>100</u>	<u>101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 · 세무서기 · 관			
세서기 · 통계서기 · 공			
업서기 · 농업서기 · 해			
양수산서기 · 항공서기			
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			
또는 방송통신서기	<u>11</u>	<u>12</u>	+1

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관세서기보 · 통계서 기보 · 공업서기보 · 농 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 기보 · 항공서기보 · 시 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<u>6</u>	<u>7</u>	+1
사무운영서기	<u>1</u>	<u>0</u>	-1
사무운영서기보	<u>3</u>	<u>2</u>	-1
.	.	.	

[별표 2의3]

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(군인 제외) 정원표(제24조제1항 본문
및 국방부령 제116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61</u>	<u>362</u>	+1
일반직 계	<u>361</u>	<u>362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 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항공사 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	<u>98</u>	<u>99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 · 세무서기 · 관 세서기 · 통계서기 · 공 업서기 · 농업서기 · 해 양수산서기 · 항공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<u>11</u>	<u>12</u>	+1

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관세서기보 · 통계서 기보 · 공업서기보 · 농 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 기보 · 항공서기보 · 시 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<u>6</u>	<u>7</u>	+1
사무운영서기	<u>1</u>	<u>0</u>	-1
사무운영서기보	<u>3</u>	<u>2</u>	-1
.	.	.	

[별표 2의4]

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(군인 제외) 정원표(제24조제1항 단서
및 국방부령 제116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62</u>	<u>363</u>	+1
일반직 계	<u>362</u>	<u>363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·농업사 무관·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·항공사 무관·시설사무관·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	<u>100</u>	<u>101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·세무서기·관 세서기·통계서기·공 업서기·농업서기·해 양수산서기·항공서기 · 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<u>11</u>	<u>12</u>	+1

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관세서기보 · 통계서 기보 · 공업서기보 · 농 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 기보 · 항공서기보 · 시 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<u>6</u>	<u>7</u>	+1
사무운영서기	<u>1</u>	<u>0</u>	-1
사무운영서기보	<u>3</u>	<u>2</u>	-1
.	.	.	

[별표 2의5]

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(군인 제외) 정원표(제24조제1항 본문
및 국방부령 제116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61</u>	<u>362</u>	+1
일반직 계	<u>361</u>	<u>362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 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항공사 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	<u>98</u>	<u>99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 · 세무서기 · 관 세서기 · 통계서기 · 공 업서기 · 농업서기 · 해 양수산서기 · 항공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<u>11</u>	<u>12</u>	+1

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관세서기보 · 통계서 기보 · 공업서기보 · 농 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 기보 · 항공서기보 · 시 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<u>6</u>	<u>7</u>	+1
사무운영서기	<u>1</u>	<u>0</u>	-1
사무운영서기보	<u>3</u>	<u>2</u>	-1
.	.	.	

[별표 2의6]

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(군인 제외) 정원표(제24조제1항 단서
및 국방부령 제116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62</u>	<u>363</u>	+1
일반직 계	<u>362</u>	<u>363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·농업사 무관·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·항공사 무관·시설사무관·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	<u>100</u>	<u>101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·세무서기·관 세서기·통계서기·공 업서기·농업서기·해 양수산서기·항공서기 · 시설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<u>11</u>	<u>12</u>	+1

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관세서기보 · 통계서 기보 · 공업서기보 · 농 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 기보 · 항공서기보 · 시 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<u>6</u>	<u>7</u>	+1
사무운영서기	<u>1</u>	<u>0</u>	-1
사무운영서기보	<u>3</u>	<u>2</u>	-1
.	.	.	

[별표 3]

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(군인 제외) 정원표(제24조제3항 본문
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41</u>	<u>343</u>	+2
일반직 계	<u>341</u>	<u>343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 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항공사 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	<u>86</u>	<u>87</u>	+1
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관 세주사 · 통계주사 · 공 업주사 · 농업주사 · 해 양수산주사 · 항공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<u>115</u>	<u>116</u>	+1
·	·	·	
행정서기 · 세무서기 · 관 세서기 · 통세서기 · 공			

업서기 · 농업서기 · 해 양수산서기 · 항공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<u>10</u>	<u>12</u>	+2
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관세서기보 · 통계서 기보 · 공업서기보 · 농 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 기보 · 항공서기보 · 시 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<u>2</u>	<u>4</u>	+2
사무운영서기	<u>2</u>	<u>0</u>	-2
사무운영서기보	<u>3</u>	<u>1</u>	-2
.	.	.	

[별표 3의2]

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(군인 제외) 정원표(제24조제3항 단서
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42</u>	<u>344</u>	+2
일반직 계	<u>342</u>	<u>344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 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항공사 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	<u>87</u>	<u>88</u>	+1
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관 세주사 · 통계주사 · 공 업주사 · 농업주사 · 해 양수산주사 · 항공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<u>113</u>	<u>114</u>	+1
·	·	·	
행정서기 · 세무서기 · 관 세서기 · 통계서기 · 공			

업서기 · 농업서기 · 해양수산물서기 · 항공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<u>9</u>	<u>11</u>	+2
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관세서기보 · 통계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농업서기보 · 해양수산물서기보 · 항공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<u>2</u>	<u>4</u>	+2
사무운영서기	<u>2</u>	<u>0</u>	-2
사무운영서기보	<u>3</u>	<u>1</u>	-2
.	.	.	

[별표 3의3]

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(군인 제외) 정원표(제24조제3항 본문
및 국방부령 제116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41</u>	<u>343</u>	+2
일반직 계	<u>341</u>	<u>343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·농업사 무관·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·항공사 무관·시설사무관·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	<u>86</u>	<u>87</u>	+1
행정주사·세무주사·관 세주사·통계주사·공 업주사·농업주사·해 양수산주사·항공주사 · 시설주사·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<u>115</u>	<u>116</u>	+1
·	·	·	
행정서기·세무서기·관			

세서기 · 통계서기 · 공 업서기 · 농업서기 · 해 양수산서기 · 항공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<u>10</u>	<u>12</u>	+2
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관세서기보 · 통계서 기보 · 공업서기보 · 농 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 기보 · 항공서기보 · 시 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<u>2</u>	<u>4</u>	+2
사무운영서기	<u>2</u>	<u>0</u>	-2
사무운영서기보	<u>3</u>	<u>1</u>	-2
.	.	.	

[별표 3의4]

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(군인 제외) 정원표(제24조제3항 단서
및 국방부령 제116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42</u>	<u>344</u>	+2
일반직 계	<u>342</u>	<u>344</u>	+2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 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항공사 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 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	<u>87</u>	<u>88</u>	+1
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관 세주사 · 통계주사 · 공 업주사 · 농업주사 · 해 양수산주사 · 항공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<u>113</u>	<u>114</u>	+1
·	·	·	
행정서기 · 세무서기 · 관			

세서기 · 통계서기 · 공 업서기 · 농업서기 · 해 양수산서기 · 항공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	<u>9</u>	<u>11</u>	+2
행정서기보 · 세무서기보 · 관세서기보 · 통계서 기보 · 공업서기보 · 농 업서기보 · 해양수산서 기보 · 항공서기보 · 시 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	<u>2</u>	<u>4</u>	+2
사무운영서기	<u>2</u>	<u>0</u>	-2
사무운영서기보	<u>3</u>	<u>1</u>	-2
.	.	.	